

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1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. 21.) 상정
- 제14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1. 21.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업지원과장 윤 인 상)

가. 제안이유

- 기금 재원의 종류를 추가하고,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재원에 “그 밖의 수입금”을 추가함.
(안 제4조제1항제3호, 신설)
- 융자금의 지원제외대상을 추가로 규정함.
(안 제13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?	○ 과거 체납기업에 대한 지원도 일부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 내용에 지원 제외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59호
의결 년월일	2009. 1. 22. (제149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. 8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기금 재원의 종류를 추가하고, 융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재원에 “그 밖의 수입금”을 추가함.(안 제4조제1항제3호, 신설)
- 나. 융자금의 지원제외대상을 추가로 규정함.(안 제13조제2항)

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관광숙박업자 중에서 호텔업을 하는 자”를 “관광숙박업 중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금융기관”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의 수입금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시금고 및 협약 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시금고”를 “금융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금고는”을 “금융기관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시의회”를 “부천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시금고와”를 “금융기관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시금고 이외 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제1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만, 적용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2. 지식기반사업자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. 다만, 적용대상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융자금의 지원 조건 및 제외대상) ①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입지자금으로 한정하되,

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지원제외대상, 업체당 지원한도액, 용자기간 및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용자금의 대출절차, 이자의 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 및 신청인”을 “금융기관 및 신청자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시금고와 협의하여 추가”를 “추가”로 한다.

제20조 및 제23조 중 “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”을 각각 “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시금고는”을 “금융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”을 각각 “금융기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에서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 이내(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 등 기일, 개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)인 자</p> <p>3.~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융자금의 지원조건) ①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입지자금에 한하며,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2. 대출금리는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하되,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3. 융자기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 또는 협약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융자금의 대출절차, 이자의 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시금고 또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</p> <p>제17조(평가 및 선정)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</p>	<p>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융자금의 지원 조건 및 제외대상) ①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입지자금으로 한정하되,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게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제외대상, 업체당 지원한도액,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융자금의 대출절차, 이자의 불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.</p> <p>제17조(평가 및 선정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시금고</u> 또는 <u>협약금융기관</u>에 대하여 기금의 용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<u>시금고</u> 및 <u>협약금융기관</u>은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② ----- -----<u>금융기관</u>----- ----- -----<u>금융기관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